

[사 건 명] 행심 2017 - 1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4. 0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인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7. 4. 4.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청구인 및 □□□에게 출석정지 5일 및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7. 4.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언행이 경솔했고 피해학생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문을 퍼트린 것이 아니었고, 남자친구들 사이의 우쭐한 영웅 심리에서 악의 없이 두어 번 내 뱉은 언행이었다.

다. 2017. 4. 4.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위원 5명은 전부 어머니들로 같은 여성인 피해학생을 심정적으로 응원하고 비호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 학교 측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 타학생들에게 시범케이스적으로 가중한 처분을 하였다.

마. 2017. 2.경 사과한 시점부터 자숙하고 있었고, 소문이 계속 퍼져나간 것은 청구인 또한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과분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린 것이 아니라지만, 청구인이 친구들에게 첫 번째 소문을 전파했을 때 이 내용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알려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또 다시 내용을 전파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위원 이외에도 경찰, 교감, 전문상담가가 참여하였고 서로 협의를 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 처분조치였다.

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하는 분위기이고, 이에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안은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비밀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에 다른 학생들의 시범케이스가 될 수 없으며 처분 과정이나 결과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소문이 계속 퍼져나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지만, 청구인이 이미 여러 친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기에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기에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다.

마. 위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청구인은 불출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2016. 5.경 □□□□으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가슴의 특정 부위가 크고 까매서 '빅파이'라 함)를 듣고, 2017. 1. 중순경 청구인이 남학생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 남학생들에게 이야기 하였고, 이후 교내 남자친구 3~4명에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 2017. 2.경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학생이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거듭 사과하였으나 피해학생이 받아주지 않자 핫김에 '질긴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피해학생은 2017. 3. 20. 자신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안전부에 직접 신고하였고, 학생안전부에서 접수 후 117에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학생에 관한 성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학생의 신체 주요 부위에 관한 성적인 이야기가 남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게 된 것으로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문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2017. 1. 중순경 첫 발언 이후 이를 확인하려는 다수 남학생들에게 또 한 차례 더 소문을 전파하여, 피해가 확대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청구인의 잘못을 바로잡아 반성의 기회를 주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석정지 5일 및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은 적절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